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23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4. 11. 27.
- (3)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중개수수료율의 차별 적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1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중개수수료”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자로부터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제공받는 대가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21조의4(통신판매중개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의 중개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중개수수료율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30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 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 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 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 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u>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통신판 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중개수수 료를 적용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적용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u> 법률 제2030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 1. ----- ----- ----- ----- ----- ----- ----- ----- ----- ----- ----- -----제21조의4제1항·제2항, 제2

현행	개정안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 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3. (생략) ②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④ ~ ⑧ (생략)	<u>2조제1항</u> ----- ----- -----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1조의4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율을 적 용하지 아니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지난해 8월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6.8%였던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하면서 주요 배달플랫폼 3개사의 중개수수료가 모두 10%¹⁾ 내외에 달하여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음.²⁾

○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 배달의민족·쿠팡이츠: 9.8%, 요기요: 12.5%

2) "1만원 팔면 500원 남아" 배민 수수료 인상에 빨간 사장님(서울경제, 2024. 7. 14.)

2024년 7월에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³⁾는 지난해 11월 최종 상생방안을 발표하였지만⁴⁾, 최종 상생방안으로 마련된 중개수수료의 인하폭이 미진하여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⁵⁾.

<주요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종 상생방안>

구간	중개수수료	배달비
현행	9.8%	1,900~2,900원
상위 35%	7.8%	2,400~3,400원
35~50%	6.8%	2,100~3,100원
50~80%		1,900~2,900원
하위 20%	2.0%	
적용기간	향후 3년간	

□ 이에 개정안은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임.

○ 참고로 부동산 중개보수, 대부중개업 중개수수료,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등은 법령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제한하고 있고,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3)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특별위원(공정위, 기재위, 농식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각 4인 동수로 총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개최(공정위 보도자료, 2024. 7. 23.)]

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 마련(공정위 보도자료, 2024. 11. 14.)
수수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p. 9)

5) 배달수수료 인하 결정에... "상생안이다" vs "상승안이다"(한국일보, 2024. 11. 17.)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중개수수료율 등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법률명	내 용		비 고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소정의 보수 ▶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 요율 및 한도액 규정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율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 연 100분의 27.9 이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율 초과 금지 ▶ 연 100분의 20	시도지사 또는 금 융위원회에 대부 업자, 대부중개업 자 등록 필요
	대부중개업 중개수수료 (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6조의8)	- 해당 대부금액의 100 분의 5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에 해당하는 금액 초 과 금지 ▶ 대부금액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해당 요율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 거래액의 일정 비율 ▶ 중도매인: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 시장도매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의 2분의 1 초과 금지	농수산물도매시 장·농수산물공판 장 또는 민영농수 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 는 지정 필요
「여신전문금융업 법」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법 제18조의3 및 고시 제25조의6)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우대수수료 율 적용 ▶ 연간 매출액에 따른 상한 규정	금융위원회의 허 가 필요

□ 다만,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6) [참고자료 2] 참조(p. 10)

(B2C)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어⁷⁾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소비자 권익의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⁸⁾.

○ 아울러 앞서 서술한 중개수수료율을 규정한 타 입법례는 해당 사업이 허가나 등록 등을 필요로 하고 대체로 정형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현행법의 통신판매중개자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고⁹⁾ 여러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32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83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777호)

9)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관계(B2C)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업자간 거래관계(B2B)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수수료 상한제 자체는 예상치 못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참고자료 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약체」 최종 상생방안

1. 수수료 부담 경감

	현행	상생방안(or 자율시행안)
배달의민족	○ 배민배달 : 중개수수료 9.8% +배달비 1.9~2.9천원 ○ 전통시장 : 0%(일부)	○ 배민배달 ▶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 - 거래액 상위 0~35% : 7.8% + 배달비 2,400~3,400원 - 거래액 중위 35~50% : 6.8% + 배달비 2,100~3,100원 - 거래액 중위 50~80% : 6.8% + 배달비 1,900~2,900원 - 거래액 하위 80~100% : 2.0% + 배달비 1,900~2,900원 ○ 전통시장 : 0%(전국) ○ 향후 3년간 시행
쿠팡이츠	○ 쿠팡배달 : 중개수수료 9.8% +배달비 1.9~2.9천원	○ 쿠팡배달 ▶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 - 거래액 상위 0~35% : 7.8% + 배달비 2,400~3,400원 - 거래액 중위 35~50% : 6.8% + 배달비 2,100~3,100원 - 거래액 중위 50~80% : 6.8% + 배달비 1,900~2,900원 - 거래액 하위 80~100% : 2.0% + 배달비 1,900~2,900원 ○ 향후 3년간 시행
요기요 (자율)	○ 가게배달 : 중개수수료 12.5% ○ 요기배달 : 중개수수료 12.5% +배달비 1.9~2.9천원 ○ 포장 : 중개수수료 12.5%	○ 가게배달 ▶ 중개수수료 9.7%(‘24.9월 既 시행) ▶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24.10월 시범운영 중) · 1구간 9.7% / 2구간 8.7% / 3구간 7.7% / 4구간 4.7% * 1~4구간 기준은 지역·입점업체별로 달리 적용 ▶ 거래액 하위 40% : 중개수수료 20% 포인트페이백 ○ 요기배달 ▶ 중개수수료 9.7%(‘24.9월 既 시행) + 배달비 1,900~2,900원 ▶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24.10월 시범운영 중) · 1구간 9.7% / 2구간 8.7% / 3구간 7.7% / 4구간 4.7% * 1~4구간 기준은 지역·입점업체별로 달리 적용 ▶ 거래액 하위 40% : 중개수수료 20% 포인트페이백 ○ 포장 ▶ 중개수수료 7.7%(‘24.9월 既 시행) ▶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 · 1구간 7.7% / 2구간 6.7% / 3구간 5.7% / 4구간 2.7% ▶ 거래액 하위 40% : 중개수수료 20% 포인트페이백

[참고자료 2] 수수료율 관련 입법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5 이하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 이하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25 이하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5 이하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백만원 초과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⑥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⑦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